

보도자료

수신 :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성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공동행동)

문의 : 명숙(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010-3168-1864), 김동현(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02-364-1210)

날짜 : 2018.7.27. 총 3쪽

<성명>

**추모할 권리마저 모독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니!
무자격 김민호 인권위원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제일기획 사외이사가 인권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屍身시위로 폄훼
복면시위금지법 도입 주장,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판

어제(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인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이하 '김 후보자')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명박 정부)을 지낸 인물로서 정보인권 법제도와 관련한 연구이력을 가지고 있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법적 구제활동을 하여 왔으며 ...정보인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인권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가"라는 국회 추천이유서의 기재처럼 김 후보자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김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함을 지적하고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먼저, 김 후보자는 제일기획의 사외이사이다. 제일기획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분기보고서의 발행 시기(2018. 6.15.자)와 자유한국당의 김 후보자 내정시점으로 알려진 시기(2018. 5. 말)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김 후보자는 사외이사 직을 유지한 상태로 자유한국당 내의 추천에 응모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알 수 있으며 향후 인권위원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도 제일기획의 사외이사 직을 겸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이하 '겸직금지규칙')>은 기업의 사외이사 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인권위원직과 겸임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과 성희롱을 판단하는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제일기획의 사외이사 선임시부터 김 후보자는 '삼성 방패막이' 역할을 할 만한 인사로 시민사회로부터 지목된 적이 있는 바,¹⁾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김 후보자의 재벌 계열사의 사외이사의 겸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금지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고 있다.

나아가 김 후보자의 겸직은 부패방지권익위법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력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현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다. 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은 행정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므로(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09헌라6 결정), 만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 직을 개시하는 것은 곧바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김 후보자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김 후보자가 시장중심의 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사무총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그의 가치관을 능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지만 이 만으로는 김 후보자의 결격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소신에 따른 이 사회의 진단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이론과 입장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코드를 맞추어온 바 있으나 이 또한 그러한 맥락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 인권 사안을 폄훼하고 나아가 인권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주장들은 김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무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와 관련한 투쟁을 '人間 존엄성까지 모독하는 屍身시위'라고 비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위법성을 의견으로 개진한 바 있었던 '복면시위금지법'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학생인권조례를 "아무런 실익이 없고 무익한 분열만을 조장하는 것"으로 평가했던 그의 언행에서 볼 때, 김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요청하는 인권위원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조속히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김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지금의 상황은 현행 인권위원 추천 및 결정 시스템이 무자격 인권위원을 검증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조속히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인물이 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경제개혁연대, "삼성그룹 사외이사 선임 기준은 '삼성 방패막이'?", 2016. 2. 24.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을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현실에서 김 후보자 같은 무자격자를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분노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김 후보자를 추인한 국회도 실망스럽다. 이제라도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인권위 혁신에 기여하는 것이다.

2018년 7월 27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도입 필요성 커진 ‘복면시위 금지법’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2001073911000005>

‘혐오 발언 제재’ 野 발상, 부적절하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62301033111000004>

소수자 우대, 시장엔 독이다 - 김민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2919821>

법조 상식 저버린 불법시위 無罪판결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1401073137191004>

人間 존엄성까지 모독하는 屍身시위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204010731371910040>

不法파업 근로자의 편법 복직 안된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41301033937191002>

서울광장은 政治집회장 아니다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121201033137191001>

민주노총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 - 김민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525010331371910041>